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18., 강명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2.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4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5. 4.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2차 정무위원회 (2026. 4.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명구의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라 함)이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시행(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하여는 현행 보훈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¹⁾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고독사 예방 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보훈 관계법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지원,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등 관련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근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은 그 특성상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여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요구됨에도, 현행 보훈 관계법률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 가구, 경제적 취약가구,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가유공자는 이러한 지표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부처간 자료 공유 등 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유공자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존 국가보훈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화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국가보훈부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중 다수는 군 관련 유공자로, 참전으로 인한 전쟁 트라우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 등 다른 유형 집단과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어 고독사 위험군 판단을 위한 지표부터 예방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있음.²⁾
- 또한, 지방 보훈관서, 지역별 보훈회관, 유공자 유형별 보훈단체 등 국가보훈부의 기존 조직 및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국가보훈부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소관 부서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고독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므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자료 요청 권한 신설도 함께 입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2)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함에 있어 전쟁 등 트라우마 여부, 보훈회관 등 복지시설 방문 횟수 등을 자체 판단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유사한 경험을 지닌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매칭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국가보훈부, 2025. 3.).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개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지 않아 해당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도 해당 협의회 위원으로서 사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료 요청 권한과 함께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3)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교육부·문체부·고용부·행안부·여가부 차관, 서울·부산·대구·부산·경북·충청·전남·전북·제주도지사, 경찰청·소방청 차장 이상 총 10인임.

4)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 그 밖에,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중 중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중복 사업은 지양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